

「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시행에 따른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·종사자 협조 사항 안내

- 적용시설 및 대상: 각종 어린이이용시설(22개 유형)의 관리주체 또는 종사자
- 안전조치 및 교육의무

구분	주요 내용
응급조치의무 (법 제13조)	☑ 응급환자 발생 시 신고·이송 등 조치 ☑ 자체 응급조치수칙 수립 및 숙지 - 주요상황 심정지, 추락, 골절, 기도폐쇄, 화상, 약물오용 등 - 조치내용 응급처치, 119 신고 및 보호자 연락, 주변통제 등 - 기타 행정안전부 발행 「가이드라인」 참조 (행정안전부 홈페이지 www.mois.go.kr에서 확인) ※ 응급신고·이송조치를 안 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(법 제18조제2항)
안전조치의무 (법 제14조~제15조)	☑ 안전사고 위험 발견 시 신고·보호 조치 ※ 신고 행위를 이유로 신고자에게 불이익조치를 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(법 제18조제1항)
안전교육의무 (법 제16조)	☑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응급처치 실습 등 안전교육 - 교육대상 어린이이용시설(22개 유형)에서 교육·보육·상담·체험활동 등의 대면업무 수행자 - 교육주기·시간 매년 1회, 4시간 - 교육내용 응급상황 행동요령, 내·외과적 응급처치이론·실습 등 - 교육비용 자부담 원칙(일부 국비 지원 예정) - 교육기관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한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 (행정안전부 홈페이지 확인)

「어린이안전법」 적용 대상 어린이이용시설

분류	시설명(총 22개)
어린이 상주 시설 (어린이가 오래 머무는 시설)	1 어린이집 2 유치원 3 초등학교 4 특수학교 5 학원 6 외국교육기관 (유치원·초등학교에 상응하는 기관) 7 장애인 거주시설 8 국제학교 (유치원·초등학교 과정을 운영하는 경우) 9 외국인학교 (유치원·초등학교 과정을 운영하는 경우) 10 대안학교 (초등학교 과정을 운영하는 경우)
어린이 왕래 시설 (어린이가 빈번하게 왕래하는 시설)	1 아동복지시설 2 공공도서관 (건물면적 264㎡ 이상, 병원·병영·교도소 도서관 제외) 3 사회복지관 4 유아교육진흥원 등 5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
기타 시설	1 대규모점포 (매장면적 1만㎡ 이상) 2 유원시설 (연면적 1만㎡ 이상) 3 전문체육시설 (관람석 5천석 이상 등) 4 공연장 (객석 1천석 이상) 5 박물관 (연면적 1만㎡ 이상) 6 미술관 (연면적 1만㎡ 이상) 7 과학관 (연면적 1만㎡ 이상)